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	----

제출년월일 : 1996. 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 직원 인건비가 구직원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구직원과의 형평성과 인건비보조에 대한 객관성 결여 및 과다보조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영등포구 지회장에 위탁하던 것을 업무가 밀접한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영등포구지회 회장에게 위탁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회장에게 위탁 (안 제2조)
- 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직원임용하던 것을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 (안 제6조 제1항)
- 다. 직원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지방사서 7급 및 8급과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에 상당하는 보수로 함(안 제6조 제3항)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나. 합 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개정조례안(따로붙임)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영등포구지회(이하 “구지회”라 한다)”를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 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구지회”를 “문고지부”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을 “문고지 부회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 제2호중 “2인”을 “3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제3호중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일반회계보조금”을 “영등포구의 일반회계보조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구지회회장” 을 “문고지부 회장”으로 하며 “3개월전까지”를 “4월전까지”로 하고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사업계 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으로 한다. 동조제4항 및 제5항의 “구지회회장”을 “문고지부 회 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 제2항중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를 “일반사서 별정직 7급상당 1명, 별정직 8급상당 1명 및 기능직(운전원) 1명의”로 한다.

-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
-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사서7급 및 8급과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을 적용하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제1항중 “구지회 회장”을 “문고지부 회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를 “문고지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이동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설치·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관리는 <u>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영등포구지회</u>(이하 “<u>구지회</u>”라 한다) 회장에 위탁한다.</p>	<p>제2조(설치·관리) ----- -----<u>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영등포구지부</u>(이하 “<u>문고지부</u>”라 한다) -----</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구지회</u>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u>운영위원회</u>”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u>새마을문고중앙회구지부회장</u>이 되고 위원은 다음각호의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1. (생략)</p> <p>2. 새마을문고지도자 <u>2인</u> 이상</p> <p>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u>3인</u> 이상</p>	<p>제4조(운영위원회) ① ----- ----- -----<u>문고지부</u>-----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문고지부 회장</u>----- ----- -----</p> <p>1. (현행과 같음)</p> <p>2. -----<u>3인</u>-----</p> <p>3. ----- -----<u>2인</u>-----</p>
<p>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u>일반회계보조금</u>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p> <p>② <u>구지회회장</u>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 개시 <u>3월전까지</u> 구청장에게 <u>보조금의 예산계상</u>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u>구지회 회장</u>은 구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전까지 이동도서관 운영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5조(예산 및 결산) ① ----- -----<u>영등포구의 일반회계보조금</u>----- -----</p> <p>② <u>문고지부회장</u>----- -----<u>4월전</u>----- -----<u>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u>을-----</p> <p>④ <u>문고지부 회장</u>----- ----- ----- ----- -----</p>

현행	개정 (안)
<p>⑤ <u>구지회 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u></p> <p>제6조(직원임용) ① <u>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하 "지부회장"이라 한다)이 새마을문고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u></p> <p>② <u>이동도서관에는 1대의 차량에 사서와 운전원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둔다.</u></p> <p>③ <u>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u></p> <p>제7조(지도·감독) ① <u>구청장은 구지회 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u></p> <p>② <u>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부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③ <u>지부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회 회장을 지도·감독한다.</u></p>	<p>⑤ <u>문고지부 회장</u> ----- ----- ----- -----</p> <p>제6조(직원임용) ① ----- <u>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한다.</u></p> <p>② ----- <u>일반사서 별정직7급상당 1명, 별정직8급상당 1명 및 기능직(운전원)1명의 직원을 둔다.</u></p> <p>③ ----- -----<u>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사서 7급 및 8급과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을 적용하되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제7조(지도·감독) ① ----- <u>문고지부 회장</u> ----- ----- -----</p> <p>② ----- ----- -----<u>문고지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u></p> <p>(삭 제)</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2. 6.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2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1996년 2월 6일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중앙협회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 직원 인건비가 구직원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구직과의 형평성과 인건비 보조에 대한 객관성 결여 및 과당보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영등포구 지회장에 위탁하던 업무가 밀접한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 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영등포구지회 회장에게 위탁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 회장에게 위탁(안 제2조)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서울특별시지부회장이 직원임용하던 것을 새마을문고중앙회영등포구지부 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안 제6조제1항)
- 직원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지방사서 7급 및 8급과 지방기능직(운전) 10등급에 상당하는 보수로 함(안 제6조제3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동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이동도서관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문화사업으로 계속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동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는 생각됩니다. 다만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급여지급 준용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수가 적어질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기는 하나 업무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높다는 것이 대다수 서울시 자치구의 보편적인 견해이며, 더구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 관리 예산을 전액 구에서 보조하면서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회장이 이동도서관의 운영·직원의 임용 및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이 조례제정 형식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나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보수지급 수준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업무의 양과 질에 따른 구 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果 : 원 안 의 결